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국회상정

건설교통부는 건설공사의 대형화·복잡화 등 건설산업 환경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부실업체 퇴출 등 건설산업 구조조정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관한 건설산업기본법개정법률(안)이 2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침에 따라 하반기 정기국회를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건설사업관리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건설사업관리자의 건설사업관리능력 평가·공시제도 도입 및 부실업체 퇴출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건설업 등록사항의 주기적 갱신신고제 도입, 일반건설업 등록권한의 지방이양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세부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부실업체 상시퇴출 시스템도입

▲ 주기적인 등록갱신 신고제 신설

건설업 등록후 자본금, 기술자 등 법정요건을 갖추지 않고 영업을 하는 부실업체의 퇴출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건설업 등록사항을 주기적으로 갱신 신고하도록 하고, 미신고시에는 시정명령하고 시정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등록말소하며, 허위 신고시에는 시정명령절차 없이 바로 등록말소하도록 한다. 갱신신고 주기는 3년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집행과정의 효율성 및 업체부담 등을 고려하여 등록요건별로 신고주기를 차등화할 계획이다.

▲ 등록말소규정 강화

현행은 “등록기준에 미달한 때”에 행정처분할 수 있어 위반사실 적발시에도 청문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미비점을 보완하기만 하면 처벌이 불가능하여 부실업체 퇴출 곤란하므로 등록말소요건을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때”로 개정하여, 등록기준 미달사실 적발시에는 보완여부와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

※작년 7월이후 전국적으로 등록기준미달로 의심되는 13,475업체를 조사하였으나, 대부분 업체가 청문과정에서 미비점을 일시 보완하여, 실제 처분된 업체는 3,971개에 불과(처분비율 : 29.5%)

▲ 변경신청기한 신설

수시로 사무소를 이전하여 지역제한 입찰제도의 실효성을 약화시키는 등 수주질서 문란사례의 방지를 위하여 상호, 대표자, 사무소소재지 등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 변경일로부터 30일이내에 변경신청하도록 하고, 미이행시에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건설사업관리(CM) 활성화

건설공사에 관한 통합적 관리역량을 육성하여 건설산업의 EC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건설사업관리제도의 활성화가 필수요건이다.

※ 건설사업관리(Construction Management)란 건설공사 전단계에 걸친 정보, 기술, 품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기법으로서, CM활용시 공사비절감, 공기단축, 적정품질확보 등이 가능하며 건설사업 관리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건설사업관리 형태의 공사발주가 촉진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발주자가 손쉽게 적정한 건설사업관리자를 선정 할 수 있도록 건설사업관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건설교통부장관이 건설사업관리자의 건설사업 관리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도록 한다. 건설사업 관리능력을 평가·공시하고자 하는 건설사업관리자는 건설사업관리실적, 관련기술자 현황, 재무상태 현황 등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평가방법 및 평가절차 등은 건설교통부령에서 정하도록 위임)

3. 일반건설업 등록 및 처분권 시·도 이양

주로 집행업무인 일반건설업 등록·실태조사·처분업무는 실제집행기관인 시·도로 그 권한을 이양하되,

중앙정부차원에서 부실업체 퇴출을 원활히 추진 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장관이 시·도에 대해 실태조사를 명하고, 실태조사결과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 산업정책적 성격이 강한 건설업체 시공능력평가 및 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 업무는 건설교통부장관으로 소관사항을 일원화 하여 정책수행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제고한다.

4. 부실시공방지 및 건설공사 현장관리 강화

▲ 원도급자 직접시공제 도입

공사품질향상 및 부실시공방지를 위하여 발주자가 원도급자에 대하여 주된 공사의 일정부분을 직접 시공하도록 도급계약조건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직접시공을 요구받은 원도급자는 직접시공 계획을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한다. 직접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의 처분을 하고,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2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건설공사대장 통보의무 신설

건설업자로 하여금 건설공사의 도급계약내용, 기술자 현장배치현황, 공사대금수령상황, 하수급인 현황 등을 기재한 건설공사대장을 발주자에게 통보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발주자가 공사수행상황을 손쉽게 파악하여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공사품질을 제고하고자 한다.

▲ 건설공사 표지게시 신설

건설공사 수행의 투명성 및 공사관계자의 책임성을 제고하여 안전사고 및 인근주민의 민원을 예방하기 위하여 공사수행중 공사내용을 기재한 표지를 공사현장에 게시하도록 하고, 공사완료시에는 설계자·시공자·감리자등 공사관계자를 기재한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한다.